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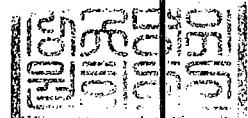
성명	한글	이재정	일본명	
	한자	李在正	이명	
출생 여월일	1846년 1월 7일		사망 연월일	1919년 9월 28일
본적	漢城 北部 嘉會坊 齋洞契 齋洞 3統 7戶(1910년 주소)			
1904년 이전				
주요 경력	1846.1.7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93쪽)		
	1882.	增廣進士 (같은 자료)		
	1885.3.	典獄寺參奉 (같은 자료, 770쪽)		
	1888.10~1891.6.	교섭아문 주사 (같은 자료, 93쪽)		
	1893.12.	甄復電郵局 주사 (같은 자료)		
	1894.10.	東擾視察[동학농민운동 - 작성자] 목록으로 내기 각의 명령을 받고 공주·전주에 감 (같은 자료, 770쪽)		
	1895.2.	법부 협판 겸 의금부 동지 (같은 자료)		
	1895.4.	고등재판소판사, 특별법원 판사 (같은 자료, 93쪽)		
	1895.8~1896.1.	법부 협판, 탁지부 협판 (같은 자료)		
	1896.10.19	독립협회 회원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년 11월 30일)		
	1896.1~1896.7.	탁지부 서리대신 (대한제국관원이력서, 93쪽)		
	1896.8~1897.10.	인천감리 겸 인천부윤 겸 인천항재판소 판사 (같은 자료)		
	1897.7~1898.6.	증추원 일등 의관(직임관3등) (같은 자료)		

1904년 ~ 1945년	
1906.1.6~1907.4.25	전라남도 영암군수(주임관1등, 종2품) (관보, 1906년 1월 10일, 1907년 4월 27일)
1907.8.12	중추원 찬의(칙임관2등) (관보, 1907년 8월 13일)
1908.	서북학회 회원, 기호홍학회 찬무원 · 저술원 (서북학회월보, 제4호, 1908년 9월 1일; 기호홍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 기호홍학회월보, 제3호, 1908년 10월 25일)
1910.10.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1912.8. 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
1919.9.28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역임 중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0월 21일)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 재직



▶ 「勳一等金允植外三十三名中樞院副議長同顧問及同贊議被仰付ノ件」, 『任免』卷 26, 1910;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3면, 「잡보」.

이재정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에 임명함.

▶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0월 21일.

“朝鮮總督府中樞院贊議從四位 李在正은 9월 28일 卒去 (후략)”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각년판

조사시기	이름	소속기관	관직	관등
1910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1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2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3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4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5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6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7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8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1919	李在正	조선총독부 중추원	贊議	(연수당1000)

【참고사항】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45년 칙령 제56호>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기타사항: 한말 단체활동

- 출전: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호, 1896년 11월 30일.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보조금 20원을 납부함.

- 출전: 『서북학회월보』 제4호, 1908년 9월 1일.

서북학회 회원.

- 출전: 『기호홍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 『기호홍학회월보』 제3호, 1908년 10월 25일.

기호홍학회 찬무원 · 저술원으로 활동하며, 기부금 10원을 납부함.

판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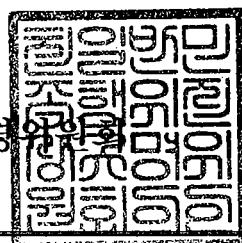
위 이재정은 1885년 전옥시 참봉을 거쳐 법부와 탁지부의 협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제국기에는 인천부윤, 전라남도 영암군수 및 중추원 일등 의관을 지낸 인물이다.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자로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어, 1919년 9월 28일 사망할 때까지 9년여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연수당 1,000원)를 지냈다. 또한 이재정은 1912년 8월 1일 칙령 제56호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재정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